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59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7호(2025.1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복귀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희면적”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빈 공간’으로 한정지었던 사항을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으로 개선함(안 제1조의2, 안 별표)

나. 국내복귀기업의 조세감면 신청에 필요한 해외사업장의 ‘축소 생산량 확인을 위한 과세년도 기준’을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과세기간 기준과 동일화(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7일까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문의처 : 044-203-4096, FAX: 044-203-471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정의) “유희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 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공간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 고 있지 아니한 곳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피해기업 적용특례 유효기간) 제5조 제5호는 2026년 12월 31일까
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완
료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유휴면적의 인정범위(제9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유휴면적
정의	국내 기존 공장 내 제조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u>연접한 공간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u>
예시	☐ 인정가능 < 기존 국내 사업장(측면도) > * 유휴공간①, ②, ③, ④, ⑤ 투자사업장으로 인정 < 기존 국내 사업장(평면도) > ☐ 인정불가 < 기존 국내 사업장(측면도) > * 유휴공간⑤, ⑥ 동시 인정 불가(반드시 양자택일)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 · 확인신청서(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생산품명	

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① 축소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	기간	. . . ~ . . .
	생산량(현지화)	
② 세액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	기간	. . . ~ . . .
	생산량(현지화)	

축소량 = ① - ② (현지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검토 ·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위의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첨부서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2. 해외사업장 축소개시 직전연도와 신청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	→	검토 · 확인서 발급	→	수령
--------	---	----	---	---------	---	----------------	---	----

신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